#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95 발의연월일: 2024. 10. 15.

발 의 자:전진숙·서미화·박희승

정진욱 · 강준현 · 민형배

박지원 • 박홍배 • 박해철

박균택 · 김남근 · 김용만

박민규 • 박수현 • 이광희

임미애 · 이기헌 · 양부남

조인철 • 송옥주 • 위성곤

권향엽 • 전종덕 • 허성무

이수진 • 전재수 • 추미애

정준호 · 안도걸 의원

(29학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5・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, 수배・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, 공소기각・유죄판결・면소판결・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・18 관련 자로 인정됨. 그러나 현행 「5・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는 5・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, 행방불명자, 부상자,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,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

5·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·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.

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,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·18민 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 법률 제 호

#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 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을 "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제4조(적용 대상자) 「5・18민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 법률」에 따라 5·18민주화운 하 "5·18민주유공자"라 한다) 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.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 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 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1. 5 · 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<삭 제> 행방불명자: 5·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또는 5 · 18민주 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 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・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. 5 · 18민주화운동부상자: 5 · | <삭 제>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

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・

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"장해등 급"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
3.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 <삭 제> 생자: 5 · 18민주화운동과 관 <u>련하여 「5·18민주화운동</u> 관 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